#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02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 강선우 · 김윤덕 · 추미애

서미화・김교흥・김 윤

박홍배 • 박해철 • 홍기원

박희승 · 정을호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이와 같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 원회는 자문위원회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 과 적극적인 추진에 미흡한 점을 드러내고 있음.

특히, 인구정책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구정책만을 담당하는 부처의 신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저출생 및 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 으로 전부 개정하고,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이 인구위기대응정책과 관련 된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기획·조정권을 갖추도록 하여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구위기대응기본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인구위기대응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누구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 2. "인구위기대응정책"이라 함은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인구위기대 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인구위기대응정책 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위기대응정책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 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인구위 기대응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구위기대응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인구위기대응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 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인구위기대응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7조(인구위기대응정책의 총괄·조정) 인구위기대응정책은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한다.
- 제8조(인구위기대응기본계획) ①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은 인구위기대응 정책의 중·장기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인구위기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1조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구위기대응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4. 그 밖에 인구위기대응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 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 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위기대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제11조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위원 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위기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업무의 협조)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구구조 변화 및 대응 관련 계

- 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인구위기대응위원회) ① 인구위기대응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구위기대응부장관 소속으로 인구위기대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변화추이 예측, 사회·경 제적 영향과 전망에 관한 사항
  - 2. 인구위기대응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5. 인구위기대응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인구위기대응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인구위기대응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3. 청년, 영·유아를 양육 중인 부모 등 인구위기대응과 관련하여 해당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회는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국회보고) 정부는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예산의 사전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중 인구위기대응 사업(인구위기대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해당 기관의 인구위기대응 사업에 관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인구위기대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 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인구위기대응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인구위기대응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③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1. 인구위기대응 사업 투자 방향
- 2.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인구위기대응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투자적 정성,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 3. 인구위기대응 사업의 유사성 · 중복성 검토결과
- 4. 그 밖에 인구위기대응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인구위기대응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안을 조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협의 및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위기대응과 관련한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인구위기 대응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

구위기대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변경하려는 사업의 예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 제3장 인구위기대응정책의 기본방향

- 제15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누구든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6조(안정적인 결혼·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누구든지 안정적인 결혼과 출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7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 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건강증진을 위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다.
- 제19조(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생 및 인구의고영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0조(평생교육과 정보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1조(고령자 고용촉진과 노후 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22조(노후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3조(노후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 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24조(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 제25조(취약계층노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26조(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 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 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27조(경제와 산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8조(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 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9조(인구의 국내 유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국내 유입 등 정착 및 사회통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 제30조(조사 및 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31조(인구위기대응정책연구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위기대응정 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구위기대 응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세계 각국의 인구위기정책과 입법에 관한 조사·연구·자문·정 보교환
  - 2. 인구위기정책 전문가 양성
  - 3. 인구위기정책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지원
  - 4. 인구위기정책 관련 학회 및 학술활동 지원
  - 5. 인구위기정책 관련 학술자료·정기간행물·보고서 등 출판물의 발간·보급
  - 6.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

다.

-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2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3조(민간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위기대응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34조(인구의 날) 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 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 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5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

- 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 다.
- 제36조(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인구위기대응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위기대응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최초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인구위기대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보궐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 제4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구위기대응부장관 소속 인구위

기대응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③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인구위기대응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③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인구 위기대응기본계획"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를 "「인구위기대응기본법」 제9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위기대응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인구 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 ④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인구위기대응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인구위기대응기본계획
- 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인구 위기대응기본계획"으로 한다.
- ⑥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정부는 「인구위기대응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인구위기대응기본계획"으로 한다.
- ⑦ 법률 제20415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위기대응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위기대응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위원

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